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박해철 · 박지원 · 이병진
송재봉 · 김종민 · 김정호
박 정 · 이연희 · 송옥주
전용기 · 이수진 · 한민수
김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 ·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 · 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 · 교재 · 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 · 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 · 사회 · 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 ·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3년마다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함(안 제10조).

사.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노동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동관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이란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차별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노동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 존중의 태도와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 노동인권교육 외에 성인·근로자·사업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 편향 없이 「교육기본법」

제6조의 중립성 원칙을 준수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발달단계·특성에 맞춰 노동인권
에 관한 실천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③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사용자·노동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
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에 노동인
권 보호에 취약한 계층(「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과
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노
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
다.

④ 국가는 학교·교육청·노동단체·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2. 사회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